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b>선 람</b>	<b>기 관 의 장</b>

제381호 2013. 9. 9 (월요일)

<b>고 시</b>
------------

- 하동군 고시 제2013-46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47차) ..... 2

<b>공 고</b>
------------

- 하동군 공고 제2013-550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 4
- 하동군 공고 제2013-564호      유어장지정사항 공고 ..... 5
- 하동군 공고 제2013-567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정민우) ..... 6
- 하동군 공고 제2013-568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공고문 ..... 7
- 하동군 공고 제2013-570호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 8
- 하동군 공고 제2013-571호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 10
- 하동군 공고 제2013-575호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 조례및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12

<b>회 람</b>									
----------------	--	--	--	--	--	--	--	--	--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감사실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 고시 제2013 - 46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47차)

도로명주소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8. 23.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532-10 외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중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산194-1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사평길 74-15	20070618	모랫둑으로 이루어져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155-7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1388	20070618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606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진목길 6	20070618	참나무 숲이 무성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월윤리 664-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갑정길 16	20070618	갑정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19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481-16	20070618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79-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목압길 34-8	20070618	진감선사가 절터를 잡기 위해 나무오리를 날렸다 해서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77-5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38	20070618	하동군을 상징하고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군청앞을 지나가는 도로로 공공시설명 적용 도로명부여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15-2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해안길 45	20090302	해안을따라 지나는길이라 명명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월윤리 298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월윤1길 1-51	20090302	이명신의 달운재 밑의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명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289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85	20090702	정기룡 장군 추모 사당을 지나가는 도로로 지역의 역사성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십리 1029-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감대로 2532-10	20090710	19번 국도의 일부로서, 섬진강을 따라 형성된 도로로 지역명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1175-12		20090710	2번 국도의 일부로서,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직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십리 602-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십안길 9-128	20130520	마을명을 도로명에 반영	신청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공고 제2013-550호

유해야생동물 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획허가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13. 8. 14

### 하 동 군 수

####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사항

- 포획 목적 : 유해야생동물 구제
- 포획 기간 : 2013. 08. 16 ~ 2013. 10. 15
- 허가 내역

허가지역	허가자 (포획자)	포획 방법	포획기간	포획동물 및 수량
하동군 악양면 등촌리, 입석리 일원	윤상욱	총렵 (자력)	2013. 08. 16 ~ 2013. 10. 15	허가기간 내 까치, 비둘기 각 100마리 이내

- 포획제외지역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및 동법 제55조(수렵의 제한),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시 안전수칙)에 해당하는 지역 및 장소
  - 군수가 정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장소

하동군 공고 제2013-564호

## 공 고

수산업법 제65조제1항 및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일

### 하 동 군 수

유어장 지정내역

지정번호	지정을 받을 자		유어장명	위 치	지정 면적 (ha)	지정기간	비고
	주 소	대표자 성 명					
제2013-2호	하동군 금남면 동산길 50-7	대치어촌계장 정 한 인	대치 유료낚시터	금남면 대치리 마을어장 9호	21.0	2013. 8. 23 2014. 5. 11	
제2013-3호	하동군 금남면 동산길 50-7	대치어촌계장 정 한 인	대치 체험어장	금남면 대치리 마을어장 9호	4.0	2013. 8. 23 2014. 8. 12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공고 제2013-567호

유해야생동물 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획허가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13. 8. 27

### 하 동 군 수

####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사항

- 포획 목적 : 유해야생동물 구제
- 포획 기간 : 2013. 08. 28 ~ 2013. 10. 27
- 허가 내역

허가지역	허가자 (포획자)	포획 방법	포획기간	포획동물 및 수량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일원	정민우	총렵 (자력)	2013. 08. 28 ~ 2013. 10. 27	허가기간 내 까치, 비둘기 각 50마리 이내

- 포획제외지역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및 동법 제55조(수렵의 제한),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시 안전수칙)에 해당하는 지역 및 장소
  - 군수가 정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장소

하동군공고 제2013-568호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공고문

○ 2013년 7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완료되어 아래와 같이 열람을 실시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랐

- 기 간 : 2013년 9월 2일 ~ 9월 27일
- 장 소 : 군청 민원과,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sup>2</sup>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3년 9월 2일 ~ 9월 27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군청 민원과, 토지소재지 읍·면민원실
- 제출방법 : 군,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055-880-2122~7)

2013년 8월 30일

하 동 군 수

하 동 군 공 보

( 8 ) 제 381 호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하동군 공고 제2013-570호

하수도법 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공 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합니다.

2013. 08. 28

하 동 군 수

1. 공공하수도 현황

처리장명	위 치	시설용량 (m <sup>3</sup> /일)	처리방식	처리구역 (km <sup>2</sup> )	배제방식	사용개시일
계산 공공하수처리시설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556-13번지	80	JSBR 공법	23.4	분류식	2013.08.28

○ 설계유입수질

처리장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계산	설 계	130	100	80	20	2.6	150,000
	방 류	7.6	14.4	8	12.4	1.28	1,000

※ ( )안은 겨울철(12월~3월) 방류수질 기준임.

○ 방류수계

처리장명	방 류 수 계
계산마을 공공하수도	처리장 → 곤양천 → 남해



2. 공고 및 열람 기간

2013. 08. 28. ~ 2013. 09. 12(15일간)

3. 기타

- 하수처리구역내 오수발생(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물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하수처리구역 열람(현황 및 도면)과 궁금한 사항은 하동군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880-26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하동군 공고 제2013-571호

하수도법 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공 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합니다.

2013. 08. 28

### 하 동 군 수

#### 1. 공공하수도 현황

처리장명	위 치	시설용량 (m <sup>3</sup> /일)	처리방식	처리구역 (km <sup>2</sup> )	배제방식	사용개시일
삼신 공공하수처리시설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394번지	70	JSBR 공법	20	분류식	2013.08.28

#### ○ 설계유입수질

처리장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삼신	설 계	130	100	80	20	2.6	160,000
	방 류	7.6	14.4	8	12.4	1.28	30

※ ( )안은 겨울철(12월~3월) 방류수질 기준임.

#### ○ 방류수계

처리장명	방 류 수 계
삼신마을 공공하수도	처리장 → 화개천 → 섬진강

2. 공고 및 열람 기간

2013. 08. 28. ~ 2013. 09. 12(15일간)

3. 기타

- 하수처리구역내 오수발생(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물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하수처리구역 열람(현황 및 도면)과 궁금한 사항은 하동군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880-26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 동 군 공 보

( 12 ) 제 381 호

하동군 공고 제2013-575호

###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주민소득지원자금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융자금 대부분에서 부터 회수까지 금융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전 체납차단 등 자금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융자금 대부분 시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 보증 및 담보물건 등을 설정하여 사전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여 선량한 군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융자대상 중 현재 사업이 중단된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 하는 가구' 항목 삭제(안 제3조)  
나. 연대보증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안 제6조, 시행규칙 안 제3조)  
다. 자금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금융기관 위탁 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을 명확 하게 정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시행 규칙 안 제5조, 제6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하동군(참조 : 통상교류과, 전화 055-880-2241, FAX 055-880-2869, e-mail : hih1021@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조례 제2013- 호

##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안”

### 1. 개정이유

- 가. 주민소득지원자금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용자금 대부분에서부터 회수까지 금융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전 체납차단 등 자금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함.
- 나. 용자금 대부분 시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 보증 및 담보물건 등을 설정하여 사전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다.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여 선량한 군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용자대상 중 현재 사업이 중단된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항목 삭제(안 제3조)
- 나. 연대보증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안 제6조)
- 다. 자금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금융기관 위탁 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정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 나. 타시군 입법사례
  - 「서울특별시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안”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3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의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군 내에 거주하는 2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를 “제1항의 대부방법은 금고계약 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신청인에게 용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를 “금고계약 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용자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상환의무자와 금고계약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연리 7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를 “금고계약 금융기관의 가계 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처리한다.”를 “금고계약 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대출시 금고계약 금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 보증 및 담보물건을 설정하고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를 “금고계약 금융기관의 용자금 관리 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고계약 금융기관의 장은 용자금 대출 후 그 내역(실제 용자수혜자 명단 및 용자실적)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본문 중 “설치한다.”를 “설치하되 자금의 관리 및 운용은 금고계약 금융기관에 위탁한다.”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하 동 군 공 보

( 16 ) 제 381 호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3조(융자대상)</b> ①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p> <p>1. 2. (생략)</p> <p>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p> <p>② · ③ (생략)</p>	<p><b>제3조(융자대상)</b>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lt; 삭제 &gt; ② · ③ (현행과 같음)</p>
<p><b>제6조(융자금 대부신청)</b> ① (생략)</p> <p>②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군 내에 거주하는 2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p>	<p><b>제6조(융자금 대부신청)</b>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대부방법은 금고계약 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p>
<p><b>제7조(대상자 선정통보)</b>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p>	<p><b>제7조(대상자 선정통보)</b> ----- ----- ----- ----- 금고계약 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b>제9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b></p> <p>① ~ ③ (생략)</p> <p>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b>제9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b></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상환의무자와 금고계약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b> ① (생략)</p> <p>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리 7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p>	<p><b>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b> ① (현행과 같음)</p> <p>② ----- 금고계약 금융기관의 가계 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1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b> 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처리한다.</p> <p>②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할 때 담보물건을 설정하고 융자할 수 있다.</p> <p><b>제12조(감독)</b>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p> <p>(신설)</p> <p><b>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b>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p> <p>(신설)</p>	<p><b>제11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b> ① ----- ----- 금고계약 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p> <p>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대출시 금고계약 금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 보증 및 담보물건을 설정하고 융자할 수 있다.</p> <p><b>제12조(감독)</b> ① ----- ----- 금고계약 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 실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p> <p>② 금고계약 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 대출 후 그 내역(실제 융자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b> ----- ----- 설치하되 자금의 관리 및 운용은 금고계약 금융기관에 위탁한다.</p> <p><b>제19조(시행규칙)</b>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하 동 군 공 보

( 18 ) 제 381 호

[별지 제1호서식]

현행

주민소득지원사업자금대부신청서

- 1. 대 부 신 청 금 액 :
- 2. 대 부 신 청 사 유 :
- 3. 상환방법 및 기간 :
- 4. 대부신청사업계획 :

- 가. 사 업 명 :
- 나. 사 업 내 용 :
- 다. 사 업 장 위 치 :
- 라. 사 업 의 필 요 성 :
- 마. 사 업 실 시 기 간 :
- 바. 재 원 계 획 :

(단위 : 원)

총 사업비	용자	자부담	자부담방법	비고

※ 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

사. 사업수지예산

(단위 : 원)

총 수익	총 비용	순 수익	비 고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주민소득사업의 용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위 신청인이 귀군으로부터 차용하는 용자금에 대해서는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책임을 지겠음을 확약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 19 ) 제 381 호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_\_\_\_\_ (인)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_\_\_\_\_ (인)

하 동 군 공 보

( 20 ) 제 381 호

[별지 제1호서식]

**개정안**

주민소득지원사업자금대부신청서

- 1. 대 부 신 청 금 액 :
- 2. 대 부 신 청 사 유 :
- 3. 상 환 방 법 및 기 간 :
- 4. 대 부 신 청 사 업 계 획 :

- 가. 사 업 명 :
- 나. 사 업 내 용 :
- 다. 사 업 장 위 치 :
- 라. 사 업 의 필 요 성 :
- 마. 사 업 실 시 기 간 :
- 바. 재 원 계 획 :

(단위 : 원)

총 사업비	용자	자부담	자부담 방법	비고

※ 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

사. 사업수지예산

(단위 : 원)

총 수익	총 비용	순 수익	비 고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주민소득사업의 용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

### 1. 개정이유

가. 주민소득지원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용자금 대부분에서부터 회수까지 금융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연대보증인 및 채납자 조치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연대보증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안 제3조)  
나.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운영 및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 시행함에 따른 연체 이자 및 채납자 조치 조항 삭제(안 제5조, 제6조)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타시군 입법선례

- 「서울특별시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
-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하동군 시행규칙 제 호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연대보증인) 삭제

제5조(연체이자) 삭제

제6조(체납자 조치)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3조(연대보증인)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른 연대보증인은 연간 재산세를 합한 금액이 3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자여야 한다.</u></p>	<p>&lt; 삭제 &gt;</p>
<p><u>제5조(연체이자)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체이자는 연 7퍼센트로 한다.</u></p>	<p>&lt; 삭제 &gt;</p>
<p><u>제6조(채납자 조치) ①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군수는 자금을 융자 받은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때에는 상환금의 납부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u>  <u>②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자가 그 납부를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체납된 상환금 회수에 따른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u>③ 자금을 융자 받은 자가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시 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u></p>	<p>&lt; 삭제 &gt;</p>